

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

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지방공무원(8급·9급)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17일

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일자: 2021. 6. 5.(토)

2. 시험시간

구 분	응시직렬(급)별	시험과목수	수험생 입실시간	시험시간(분)
공개경쟁	일반직 8급·9급	5개 과목	09:20까지	10:00 ~ 11:40(100분)
	일반직 9급(장애_1.5배시간연장)	5개 과목	09:20까지	10:00 ~ 12:30(150분)
	일반직 9급(장애_1.7배시간연장)	5개 과목	09:20까지	10:00 ~ 12:50(170분)

3. 시험장소: 【붙임1】 「응시직렬(류)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」 참조

- ※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필기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접속
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에서 출력(2021. 5. 17.부터 출력가능)

4. 응시자 준수사항

『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』

- 가. 시험장은 필기시험 전·후로 ‘코로나19 방역소독’을 할 예정입니다. 모든 응시자는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장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를 해야합니다.
 - 시험장 내에서는 개인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,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합니다.
응시자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- 철저한 손씻기 등 코로나 19 감염예방 수칙 준수
 - 시험실 환기를 위해 창문, 출입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오니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 준비
- 나. 코로나19 확진환자, 의사환자*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 격리 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오니, 개인 건강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- 다. 시험 당일 유증상자(37.5℃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)는 2차 검사 및 문진표 작성 후 별도 지정된 시험실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됩니다.
- 라.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.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고자 응시생 건강 상태(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) 및 최근 출입국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오니 ‘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내에 자진신고시스템’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자진신고 운영기간: 5. 24.(월) ~ 6. 4.(금)
- 바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,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기한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문제 수송, 시험장 준비 등의 관계로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사전 신청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 불가
 - 타 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시험 여건 등에 따라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

< 확진자가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>

- ① (확진자 신고) 수험생은 확진자로 통보받은 즉시 수험생임을 관할 보건소 및 시험주관 부서에 유선전화 신청(총무과 인재채용팀, 064-710-6223,6225)
- ② (시험응시 신청)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함
 - 신청기간: 2021. 5. 17.(월) 10시 ~ 2021. 6. 4.(금) 18시
 - 제출서류: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(붙임 4 서식 활용), 주치의 소견서
 - ※ 유선 신청 후 이메일 제출(ku1023@korea.kr 또는 별도 지정 이메일)

< 자가격리자가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>

- ① **(자가격리자 신고)** 수험생은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즉시 수험생임을 관할 보건소 및 시험주관 부서에 유선전화 신청(총무과 인재채용팀, 064-710-6223,6225)
- ② **(시험응시 신청)** 수험생은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외출허가 요청을 하여 외출확인을 받아 기한 내 신청
 - 신청기간: 2021. 5. 17.(월) 10시 ~ 2021. 6. 4.(금) 18시
 - 제출서류: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(붙임 4 서식 활용), 외출허가 증빙서류
 - ※ 유선 신청 후 이메일 제출(ku1023@korea.kr 또는 별도 지정 이메일)

『일반사항』

가.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미리 공고된 시험장 주 출입문에 부착된 시험실배치도를 확인하고 09:20까지 본인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
※ 응시자에 한해 08:00부터 시험실을 개방합니다.

※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(09:50분경)에는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나.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
○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유효한 여권(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)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를 소지

※ 공무원증, 재외도민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다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(사인펜에 “컴퓨터용”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
※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※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라. 시험시작 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(1개)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
마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배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섭취, 수분 과다섭취 등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
※ 단, 시험시간 연장자의 경우 정규시험시간 종료(11:40) 후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(단,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)

바.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

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

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

사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 작성하거나, 답안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가 됩니다.

아.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위치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
※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

자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차.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카.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에서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(시험실 내 시계는 실제 시험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)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(수능시계 등 아날로그 시계)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※ 계산기능 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및 스톱워치는 사용할 수 없음

타. 필기시험 문제 중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(국어, 영어, 한국사 등 37과목)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 출제한 다음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시험 종료 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문제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
※ 비공개 대상 시험과목(9개 과목)

- 보건진료 8급(공중보건), 축산 9급(가축사양, 가축육종), 일반수산 9급(수산일반, 수산경영), 보건 9급(공중보건, 보건행정), 도시계획 9급(도시계획개론, 토지이용계획)

5. 부정행위 등 금지

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1항 제1호~제6호 위반행위

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,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2항 제1호 ~ 4호 위반행위

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
 -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에 답안 또는 기타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1. 7. 8.(목)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(www.jeju.go.kr) 「일자리/중소기업→시험·채용정보」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나.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,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※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접속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“합격/성적조회”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다. 기타 시험 관련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064-710-6223,62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 안내

가.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.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(2021. 6. 4. 24:00)까지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

※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접속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“가산자격증 등록”

나.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1.6.4. 24:00)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(☎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☎064-710-8407)

8.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안내

가. ‘조정점수제’ 도입 취지

○ 조정점수(표준점수)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.

○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과목 간 난이도 차이 발생 시 득점하기 쉬운 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나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
- 조정점수는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 줍니다.

-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,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,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.

○ 선택과목이 도입된 국내시험 대부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.

※ 대학 수능시험('99년 도입), 사법시험('08년 도입), 공인노무사('11년 도입)

나. 조정점수제 적용

○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

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관련)

$$\text{조정점수} = \left\{ \frac{(\text{응시자의 점수} - 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})}{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}} \right\} \times 10 + 50$$

※비고

1.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$\sqrt{\frac{(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} - 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})^2 \text{의 총합}}{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} - 1}}$$

2.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55조의3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.

3.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**조정점수 산출시 제55조의3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.**

4.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.

○ **(과락 기준)**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%이상일 경우(40점 이상)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※ (예시) 사회: ① 원점수(35점), 조정점수(41점) ⇨ 과락 아님

② 원점수(40점), 조정점수(37점) ⇨ 과락 아님

○ **(가산점 부여시기)**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.

※ 조정점수제 적용 직렬: 행정직, 세무직, 사회복지직, 사서직

붙임 1. 응시직렬(류)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

2. 시험장 약도

3. 코로나 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

4.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

【붙임 1】 응시직렬(류) 및 응시번호별 시험 장소

< 시험장소 확인 시 주의사항 >

- 응시자 본인의 시험직렬, 임용기관, 응시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임신부 및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한라중학교로 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㉠ 한라중학교(제주시 과원북2길 24, ☎ 766-3100)

시험직렬명		임용기관	응시번호
편의 지원 신청자	일반행정(장애)	도일팔	12950001~12950013
	사회복지(장애)	도일팔	16950001~16950002
	일반토목	도	52910001~52910001
	간호	서귀포시	44830001~44830001
	일반행정	도	11910001~11910001
	농업	서귀포시	33930001~33930001
	산림자원	도	34910001~34910001
일반행정(장애)		도일팔	12950014~12950046
사회복지(장애)		도일팔	16950003~16950005
건축(장애)		도일팔	56950001~56950001
일반행정(저소득)		도일팔	13050001~13050047
축산		제주시	32920001~32920033
축산		서귀포시	32930001~32930006
보건진료		서귀포시	43830001~43830046
보건		도	42910001~42920030
보건		제주시	42920001~42920127
보건		서귀포시	42930001~42930007
일반수산		도	65910001~65910065
일반수산		제주시	65920001~65920009
일반수산		서귀포시	65930001~65930024
도시계획		제주시	57920001~57920006
사서		제주시	27920001~27920032
간호		도	44810001~44810016
간호		제주시	44820001~44820131
간호		서귀포시	44830002~44830016

㉒ 제주중앙중학교(제주시 선덕로5길 37, ☎ 728-0800)

시험직류명	임용기관	응시번호
일반행정	도	11910002~11910520
일반행정	제주시	11920001~11920181

㉓ 제주고등학교(제주시 1100로 3213, ☎ 750-4114)

시험직류명	임용기관	응시번호
일반행정	제주시	11920182~11920717
일반행정	서귀포시	11930001~11930024

㉔ 아라중학교(제주시 간월동로 30, ☎ 754-6700)

시험직류명	임용기관	응시번호
일반행정	서귀포시	11930025~11930422

㉕ 탐라중학교(제주시 신설로 56, ☎ 754-5001)

시험직류명	임용기관	응시번호
사회복지	제주시	15920001~15920097
사회복지	서귀포시	15930001~15930101
지방세	서귀포시	22530001~22530079
전산	도	13910001~13910042
전산	제주시	13920001~13920014
농업	도	33910001~33910068
농업	제주시	33920001~33920011
농업	서귀포시	33930002~33930021
산림자원	도	34910002~34910050
산림자원	제주시	34920001~34920043
산림자원	서귀포시	34930001~34930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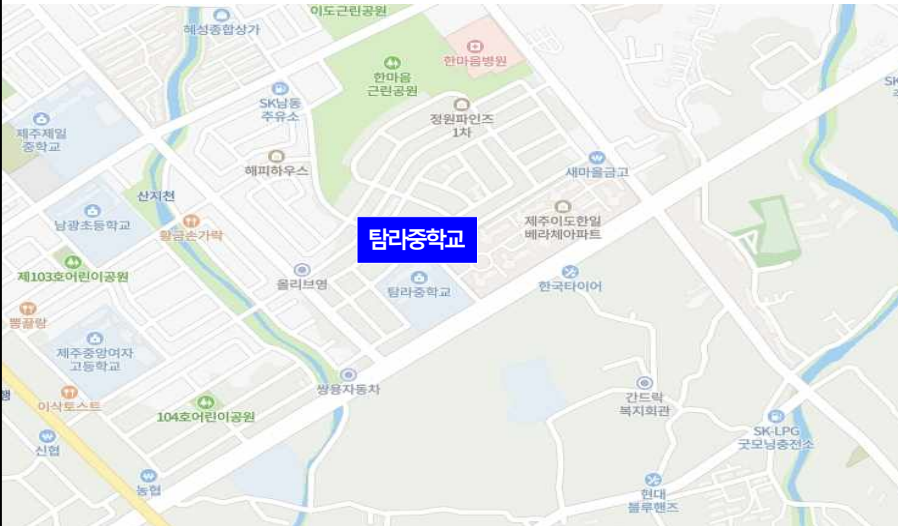
㉖ 오름중학교(제주시 화삼북로 110, ☎ 754-9400)

시험직류명	임용기관	응시번호
건축	도	55910001~55910023
건축	제주시	55920001~55920073
건축	서귀포시	55930001~55930009
방재 안전	제주시	65120001~65120028
방재 안전	서귀포시	65130001~65130006
일반기계	도	21910001~21910042
일반기계	제주시	21920001~21920021
일반토목	도	52910002~52910058
일반토목	제주시	52920001~52920045
일반토목	서귀포시	52930001~52930059
일반전기	도	23910001~23910032
일반전기	제주시	23920001~23920038
일반환경	도	36910001~36910010
일반환경	제주시	36920001~36920031
일반환경	서귀포시	36930001~36930013
일반화공	도일괄	25950001~25950010
지적	도일괄	58950001~58950017

【붙임 2】 시험장 약도



탐라중학교 (제주시 신설로 56, ☎064-754-5000)



오름중학교 (제주시 화삼북로 110, ☎064-754-9400)



【붙임 3】 코로나 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

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

- ▼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
 - 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- ▼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수험생과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-
확진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

- ☐ 성 명 : _____
- ☐ 생년월일 : _____
- ☐ 응시번호 : _____
- ☐ 지원사항(직렬/직급) : _____
- ☐ 격리장소 : _____
- ☐ 연 락 처
- 본 인 : _____
- 가족 등 : _____
- 기 타 : _____

※ 별도시험장 응시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
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(2개 이상)

본인은 코로나19 확진자 판정(통보)를 받아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에서
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.

신청일자 2021. . .
신 청 인 _____ (서명)

붙임 : 주치의 소견서 1부.

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-
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

- ☐ 성 명 : _____
- ☐ 생년월일 : _____
- ☐ 응시번호 : _____
- ☐ 지원사항(직렬/직급) : _____
- ☐ 격리장소 : _____
- ☐ 연 락 처
- 본 인 : _____
- 가족 등 : _____
- 기 타 : _____

※ 별도시험장 응시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
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(2개 이상)

본인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판정(통보)를 받아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
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.

신청일자 2021. . .
신 청 인 _____ (서명)

붙임 : 외출허가 증빙서류 1부.

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